

## 입학전형 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1996. 12. 14 개정 1997. 03. 10

개정 2007. 03. 01 개정 2013. 02.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동대학교의 대학입학전형 제도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고, 조사연구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동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입학 전형관리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 개발에 관한 사항
4. 대학입학 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  
(전형유형, 전형자료, 자격기준, 사정방법, 전형일정, 모집인원의 배분 등)
5. 기타 대학입학 전형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 2. 28)

② 위원회는 대학입학 전형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1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소관부서 및 업무관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입학관리실에서 주무한다.

제9조(재정)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필요시 별도의 세부사항으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모집요강 상의 내용으로 대신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 12.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 3. 10일부터 개정하여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